

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99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8. 29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8. 2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9. 10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관광진흥과장 김영국)

가. 제안이유

- 1) 문화체육관광부의 「걷기여행 활성화 사업」과 관련하여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쉼터가 위치한 우리군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남파랑길을 활용한 걷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걷기여행 및 운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
- 2)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·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하고 수준높은 걷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성에서의 체류형 관광을 위하여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위탁근거

- 1) 「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대상업무)
- 2)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,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
다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: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
- 2) 위탁대상: 남파랑길 고성 쉼터 운영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

가) 코리아둘레길 걷기전문가 인력양성: 12명

- 인원 및 내용: 12명, 고성구간 프로그램 걷기 전문가 교육

나)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

- 대 상: 남파랑길 5개 코스 6개 프로그램 운영
- 운영기간: 3 ~ 11월 매월 토·일 운영(혹서기 등 제외)

다) 남파랑길 고성쉼터 운영

- 주 소: 고성군 하일면 맥전포동길 25
- 근로자 채용: 2명(1명씩 교대근무), 월 휴무(2026. 3월 ~ 운영)
- 운영내용
 - 고성군 관광 정보 및 코리아둘레길 정보 안내
 - 휴게공간, 물품보관, 상품운영 등

3) 위탁기간: 위탁일로부터 3년(예정: 2026. 1. ~ 2028. 12.)

4) 위탁방법: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

5) 위탁사무의 범위: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운영 전반

- 쉼터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(인력채용, 시설관리 등)
- 걷기 프로그램 계획수립·운영·인력양성·홍보
-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

라. 추진일정

- 1) 2025. 8.: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위탁 군의회 동의
- 2) 2026. 1.: 위탁 사업자 공고 및 접수
- 3) 2026. 1.: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
- 4) 2026. 2.: 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- 대한민국 코리아둘레길(4,544km) 중 남해의 남파랑길(90개 코스 1,470km 중 고성군 5개 코스 84km) 고성 쉼터 운영과 남파랑길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됨.

○ 주요 내용 검토

- 민간위탁 근거

- 「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0조, 제11조에 따라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·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.
-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 운영, 걷기 전문가 양성, 남파랑길 고성 쉼터의 운영 등에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함

- 민간위탁 기간: 위탁일로부터 3년

- ※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14조제2항으로 정한 5년 이내

- 수탁기관 선정방식 적정성: 공개모집 원칙으로 적정

- ※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적정

- 위탁 사업예산의 적정성: 국비 예산지원 범위에 따라 증감되는 사업 (국 50%, 군 50%)으로 2025년 기준 100,000천 원을 계획하였음.

- ※ 위탁 연도별(3년간) 소요예산 충족으로 검토함

- 관련 절차 이행 여부: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사전 이행

- ※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등 7개 항목 검토

○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 등에 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